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최근 행정환경 및 관련 법규들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구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 그 활용범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4조제2항)
- 자문인의 위촉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토록 함(안 제4조제3항)
-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의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제52조

5. 검토의견

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 관련내용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는 것은 최근 시의회 업무의 다양화·다변화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